

제 호

## 일시적튜닝 승인서

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신청인             | 성명(법인명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생년월일(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)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| 전화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휴대전화번호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| 주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자동차             | 차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형식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| 원동기형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| 자동차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차대번호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튜닝<br>사항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튜닝 전                    | 튜닝 후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| 길이×너비×높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0,000mm×0,000mm×0,000mm | 0,000mm×0,000mm×0,000mm |
|                 | 차량총중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0,000kg                 | 0,000kg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| 부착물 또는 구조·장치 변경 내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일시적<br>튜닝<br>사유 | 예) 「공직선거법」 제79조제3항에 따른 공개장소에서의 연설·대담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유효기간            | 예) 0000년00월00일 ~ 0000년00월00일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

「자동차관리법」 제3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의3제4항에 따라 일시적튜닝을 승인합니다.

년 월 일

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직인

### 유의사항

- 일시적튜닝 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자동차를 제56조의2제1항 각 호의 목적에 따라 사용하기 전까지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법 제34조제2항 전단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튜닝작업과 그에 따른 정비(자동차제작자등의 경우에는 튜닝만 해당합니다)를 받아야 합니다.
- 번호판은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로 인하여 가려지지 않도록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제3조에 따른 부착방법대로 부착되어야 합니다.
- 유효기간 이내에 자동차를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일시적 튜닝 이전 상태로 원상복구해야 합니다.